유학생 문화창의 센터 운영규정

제 정 2018.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문화창의 분위기를 위해 설치하는 **「유학생 문화창의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 통할) 센터의 제반 업무는 국제교류처장이 총괄한다.

제3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국제교류처 처장이 겸임하거나 국제교류처 처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센터 근무 정원 및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 등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처 처장이 본교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분장업무) 센터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송대학교 미디어디자인학과의 장점을 이용하여 대학생 문화 창의 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2. 문화 창의 디자인 경기 대회를 개최하여 문화 창의 방안을 수집하며 우수한 인재을 선발한다.
3. 우송대 특색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며 우송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한다,
4. 기타 국제교류처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세칙) 국제교류처 처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